

용인시 공고 제2025 - 3606호

용인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

「하수도법」 제61조, 「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26일

용 인 시 장

1.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

-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단위단가 : 3,278,000원/m³
- 타행위에 대한 단위단가 : 3,278,000원/m³

2. 문의 :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(☎ 031-6193-9343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공고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